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1년 8월 9일

○ 회부일자 : 2001년 8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관계법령의 개폐 및 다른 위원회의 통·폐합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일부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위원회의 기능 재조정

- 중복 및 폐지된 규정 삭제
 - 이의신청 심의
 -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
 - 각종 가격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
 -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
 -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

- 신규사항 추가
 - 보안심사
 - 정보공개 심의사항

○ 일부 불부합한 자구수정

- “실·과장” ⇒ “과장”
- “국유재산의 대부 및 심사에과한 사항”
⇒ “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심의”로 함.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관련법규의 개정과 중복 또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,

주요내용으로는

조례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,

조직개편 등으로 일부 불 부합한 조항 “실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, “국유재산의 대부 및 심사에 관한사항”을 “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심의”로 개정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고,

위원회의 기능을 재조명하여 중복 폐지된 이의신청 심의, 농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, 각종 가격과 요금조정에 관한사항, 가 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,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을 삭제하고,

신규항목으로 보안심사, 정보공개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것으로써,

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목적과 중요부분이 대부분 개정되어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나 부분개정으로 처리한 사유와 동 조례 제2조 중 단서조항은 현실적으로 대행하는 위원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삽입한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